# 서울특별시 시세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 의안 번호 | 138 |
|---|---|

2014년 12월 1일
행정자치위원회

## 1. 심사결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4년 10월 30일, 서울특별시장

나. 회부일자 : 2014년 11월 3일

다. 상정결과 : 제257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2014년 12월 1일 상정·의결(원안가결)

##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재무국장 김 영 한)

### 가. 제안이유

○ 「지방세기본법」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납세자 등에게 교부할 금전을 시 금고에 예탁하도록 개정하고, 인용 조문 및 용어 등을 정비하여 관련 조문에 대한 납세자의 이해를 높이고자 함.

### 나. 주요내용

○ 「지방세기본법」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공매 등에서 발생한 교부할 금전을 자치단체의 금고에 예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

○ 법제원칙에 맞게 일부 조항을 삭제하고, 조례의 원활한 이해를 위해 인용 조문 및 용어를 정비함(안 제2조, 제9조, 제14조, 제15조, 제23조, 제24조, 제49조).

##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한 태 식)

### 가. 교부할 금전의 처리방법(안 제18조)

○ 동 개정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인용 법률조문에 대한 규정을 보완하여, 납세자 등에게 교부할 금전을 시금고에 예탁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 「지방세기본법」 개정(2014년 1월 1일)에 따라, 채권자, 납세자 등에게 교부할 금전에 대한 공탁 관련 규정이 삭제되고 지방세기본법, 지방세관계법 및 조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금고에 예탁할 수 있게 되었음.[1)]

○ 즉, 현행 「공탁법」은 공탁한 금전이 채권소멸시효인 10년을 경과하면 국고에 귀속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2)]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업무와 관련하여 교부할 목적으로 준비한 금전을 국고에 귀속시키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므로 「지방세기본법」의 개정을 통해 이러한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여 납세자 등에 교부할 금전을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하는 금고에 예탁시키도록 한 것임.

---

1) 지방세기본법 제72조(교부금전의 예탁)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과 그 법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조례에 의하여 채권자, 납세자, 그 밖의 자에게 교부할 금전은 「지방재정법」 제77조에 따라 지정된 금고에 예탁할 수 있다.

② 세무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예탁하였을 때에는 그 채권자, 납세자, 그 밖의 자에게 알려야 한다.

2) 공탁법 제9조(공탁물의 수령·회수) ① 공탁물을 수령하려는 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리를 증명하여야 한다.

② 공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사실을 증명하여 공탁물을 회수할 수 있다.

1. 「민법」 제489조에 따르는 경우
2. 착오로 공탁을 한 경우
3. 공탁의 원인이 소멸한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의 공탁물이 금전인 경우(제7조에 따른 유가증권상환금, 배당금과 제11조에 따른 물품을 매각하여 그 대금을 공탁한 경우를 포함한다) 그 원금 또는 이자의 수령, 회수에 대한 권리는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 금번 조례 개정을 통하여 채권자, 납세자 등에게 교부할 금전을 시 금고 예탁으로 일원화함에 따라 실질적으로 시금고의 예탁을 통해 처리해 오던 행정집행방법에 맞게 '채권자, 납세자 등에게 교부할 금전'에 대한 규정이 보완되는 것으로 사료됨.

※ 그동안 서울시는 공탁에 의한 교부금전 처리는 없었음.

## 나. 징수유예 등의 취소(안 제24조)

○ 안 제24조는 징수유예 등을 취소한 경우 관련 시세의 징수에 대하여 시장이 일시에 징수하여야 하는 현행 강행규정을 시장의 판단역량에 따라 일시에 징수할 수 있도록 임의규정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상위법인 「지방세기본법」 제84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징수유예 등을 취소하고 그 징수유예에 관계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또는 체납액을 징수하는 경우, 일시에 징수할 수 있는 결정권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량을 부여하고 있음.

○ 반면, 현행 조례(「서울특별시 시세기본조례」 제24조)에서는 시장이 징수유예 등을 취소한 경우에는 이에 관련된 시세를 한꺼번에 징수하도록 강제하고 있는 바, 이는 상위법에서 징수금 및 체납액의 징수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부여된 판단재량에 제한을 가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따라서 동 조례의 개정을 통하여 시장이 시세의 징수유예 등을 취소한 경우, 이에 관련된 시세를 일시에 징수할 것인지, 아니면 분할해서 징수할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는 재량권을 부여하는 것인 바, 시세의 징수유예 취소로 인하여 시세를 납부해야 할 의무가 발생한 납세자에게 일시 납부로 인한 경제적 부담 등을 경감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임.

○ 다만, 현행 규정상 징수유예 등의 취소에 따른 일시납부 의무규정의 임의규정화로 개정될 경우, 시세 징수의 강제력 약화로 이어질 우려가

있는 바, 공정하고 적극적인 시세징수 체계 확립에 차질이 없도록 하는 집행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요망된다 하겠음.

〈관련 내용에 대한 법·조례 비교〉

| 지방세기본법 | 서울특별시 시세기본조례 (현 행) | 서울특별시 시세기본조례 개정안 |
|---|---|---|
| 제84조(징수유예등의 취소) ① 제80조에 따라 징수유예등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징수유예등을 취소하고 그 징수유예에 관계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또는 체납액을 한꺼번에 징수할 수 있다. | 제24조(징수유예등의 취소) 법 제84조에 따라 징수유예등을 취소한 경우에는 이에 관련된 시세를 한꺼번에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분할고지를 한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총금액을 한꺼번에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 제24조(징수유예등의 취소) 법 제84조에 따라 징수유예등을 취소한 경우에는 이에 관련된 시세를 한꺼번에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분할고지를 한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총금액을 한꺼번에 부과·징수한다. |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 음

5. 토 론 요 지 : 없 음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 서울특별시 시세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시세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시세기본조례”를 “시세기본 조례”로 한다.

제2조제2호를 삭제한다.

제8조제2항 중 “보통우편”을 “일반우편”으로 한다.

제9조의 제목 중 “보통우편”을 “일반우편”으로 하고, 같은 조 전단 중 “보통우편”을 각각 “일반우편”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미납시세”를 “법 제64조에 따른 미납시세”로 하고, 같은 조 단서를 삭제한다.

제15조제3항 중 “주무관청이 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등의 취소를 결정하면 ”을 “주무관청으로부터 영 제51조제2항의 통지를 받으면”으로 한다.

제18조의 제목 “(공탁 등)”을 “(교부금전의 예탁)”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본문 중 “공탁하거나”를 삭제하고, 같은 조 단서를 삭제한다.

제23조제1항 중 “영 제67조 및 제68조”를 “법 제80조 및 조례 제22조”로 한다.

제24조 전단 중 “징수하여야 한다”를 “징수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후단 중 “부과징수하여야 한다”를 “부과·징수한다”로 한다.

제49조 중 “법 제141조”를 “법 제141조제1항”으로 한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 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 --- |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br>1. (생 략)<br>2. "우편"이란 「우편법 시행령」 및 「우편법 시행규칙」에 따른 보통우편 및 등기우편(배달증명 우편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br>1. (현행과 같음)<br><삭 제> |
| 제8조(서류송달의 방법)<br>① (생 략) | ① (현행과 같음) |
|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과세기준일과 납기가 정하여져 있고 매년 부과고지하는 시세 중 1매당 세액이 30만원 미만인 납세고지서 또는 독촉장의 송달은 보통우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 ② ---------- 일반우편----------. |
| ③ ~ ⑤ (생 략) | ③ ~ ⑤ (현행과 같음) |
| 제9조(보통우편 송달부) 보통우편의 방법으로 송달한 경우 법 제30조제6항에 따른 보통우편 송달부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경우 발송한 우체국의 통신일부인을 날인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 제9조(일반우편 송달부) 일반우편---------- 일반우편 ----------. ----------. |

| 현 행 | 개 정 안 |
| --- | --- |
| 제14조(미납시세 등의 열람) ① 미납시세의 열람신청은 임차인이 하여야 한다. 다만, 임차인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가족관계에 있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열람하도록 할 수 있다. | 제14조(미납시세 등의 열람) ① 법 제64조에 따른 미납시세----------. <삭 제> |
| 제15조(허가등의 제한)<br>① ~ ② (생 략)<br>③ 시장·구청장은 주무관청이 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등의 취소를 결정하면 해당 납세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 제15조(허가등의 제한)<br>① ~ ② (현행과 같음)<br>③ -------- 주무관청으로부터 영 제51조제2항의 통지를 받으면 ----------. |
| 제18조(공탁 등) ① 배분한 금전 중 채권자에게 지급하지 못한 것은 법 제72조에 따라 공탁하거나 시금고에 예탁할 수 있다. 다만, 시금고에 예탁할 경우 예탁일부터 6개월을 초과하게 된 때에는 공탁하여야 한다. | 제18조(교부금전의 예탁) ① ----------<삭 제> ----------. <삭 제> |
| 제23조(징수유예등의 처리) ① 세무공무원은 영 제67조 및 제68조에 따라 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유예등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신청내용 및 담 | 제23조(징수유예등의 처리) ① ----------법 제80조 및 조례 제22조---------- |

| 현 행 | 개 정 안 |
| --- | --- |
| 보내용 등을 검토하고 현장조사 등을 통하여 사실여부를 확인한 후에 징수유예등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 ----------<br>----------<br>----------. |
| ②(생 략) | ②(현행과 같음) |
| 제24조(징수유예등의 취소) 법 제84조에 따라 징수유예등을 취소한 경우에는 이에 관련된 시세를 한꺼번에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분할고지를 한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총금액을 한꺼번에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 제24조(징수유예등의 취소) ----------<br>----------<br>----------**징수할 수 있다**. ----------<br>----------<br>----------**부과·징수한다.** |
| 제49조(지방세심의위원회) **법 제141조** 각 호에 대한 사항을 심사 또는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49조(지방세심의위원회) **법 제141조 제1항** ----------<br>----------<br>----------<br>------. |